

사전자산배분기준규정

	승인일	시행일	승인권자
제정	June 29, 2015	July 1, 2015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사전자산배분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 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이하 “사전자산배분”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자자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 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펀드 간의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 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5.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의 매매
6.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따른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 그 밖에 펀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사전자산배분의 기록) 제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기 전에 거래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 단기대출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은 기안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자산배분원칙) ①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한 자산의 투자신탁별 배분은 사전자산배분에 따라 특정 수익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불리가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동일종목의 배분은 매매주문별로 균등한 가격으로 하며, 주문 시간이 다른 동일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③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전자산배분에 따른 주문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배분 후 발생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순자산이 가장 큰 투자신탁에 배정한다.
 ④ 위 1,2,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사전배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 투자신탁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는 제외한다.

제5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사전자산배분에 따라 체결결과를 배분하는 경우 약관 및 법규를 위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위반 방지를 위하여 수량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하여 사전자산배분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분리)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펀드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의 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7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공시)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의 예외)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특성상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특정 투자신탁 또는 특정 수익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자산배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